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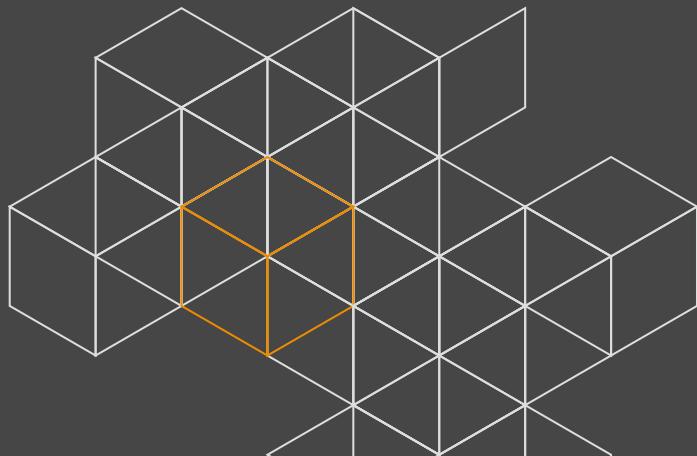


PwC 베트남 뉴스레터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



www.pwc.com/vn



At a glance..

재무부는 베트남 국회에 제출할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대중 의견수렴을 위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BEPS)에 대한 필라2 모델에 따라 필라2를 적용받는 다국적 기업은 **법인이 소재한 관할권별로** 소득의 15% 최저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 결의안은 베트남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의 이행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제안됩니다.



1

세부 사항...

동 결의안은 필라2 모델하 OECD에 의해 발표된 지침에 따르며 다음 두 가지 주요 규칙 (i) 적격국내최저한세 (“QDMTT”) 및 (ii) 소득산입규칙 (“IIR”)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규칙 모두 필라2의 글로벌 시행의 맥락에서 베트남의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격국내최저한세 규칙은 해외 인바운드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산입규칙은 베트남 아웃바운드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QDMTT	IIR
적용대상 납세자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며 최종모회사인 다국적 기업그룹의 베트남 자회사	회계연도 중 직간접적으로 저과세 자회사를 소유하며,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베트남 최종모회사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중간모회사 또는 부분 소유 모회사
시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용대상 납세자는 추가 세율 (15%에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뺀 요율)에 매 회계연도의 초과이익을 곱해서 나오는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베트남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GloBE”) 소득, 초과이익 및 실효세율의 산정 방법은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손익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기업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모든 구성기업의 GloBE 이익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며 GloBE 손익이 해당 회계연도에 적자이거나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적격국내최저한세 금액은 영(‘0’)입니다.	적용대상 납세자는 회계연도에 저과세 구성기업에게 할당되는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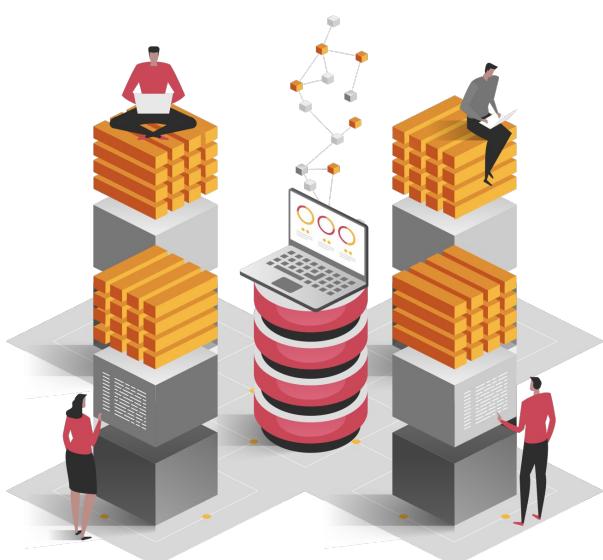


세부 사항...

	QDMTT	IIR
베트남 세금 신고 의무 관련 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용대상 납세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적격국내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베트남에서 QDMTT를 납부할 하나의 기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이 위의 기한을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다국적 기업의 한 구성기업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과합니다.	적용대상 납세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소득산입규칙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PwC 베트남의 관점

- 다국적 기업은 본 기업의 베트남 내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 결의안은 납세자가 투자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정부가 납세자와 협력할 것을 인가합니다.
- QDMTT 및 IIR 신고서는 아직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OECD에서 최근에 발표한 GloBE 정보 교환 지침 및 양식을 참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제안됩니다.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용대상 납세자는 세금 신고 기한 전까지는 아직 1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향후 법인세 납부에 미치는 결의안의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ichard Irwin

Partner

r.j.irwin@pwc.com



박준형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park.junhyung@pwc.com



Nghiem Hoang Lan

Partner

nghiem.hoang.lan@pwc.com



우정균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jung.kyun.woo@pwc.com



Judith Henry

Director

judith.henry@pwc.com

www.pwc.com/vn

